#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4호에 의거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년보장임용 대상)** ①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정년보장임용대상교원으로 한다. (개정 2011.9.28, 2012.9.1.)

| 심사대상자 | 심사기간 |
|---|---|
| 1.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된 자 | 계약기간 3년 |
| 2. 교수 승진임용 예정자 | 현 직급 근무기간 |
| 3. 기간제 임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교수로서 정년보장 신청자 | 부교수 이후의 임용기간 |
| 4. 교수로서 현재의 기간제 임용기간(6년)이 만료된 자 | 부교수 이후의 임용기간 |

②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신청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9.28.)

**제3조 (정년보장임용의 심사기준 및 절차)**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규정, 교원인사규정 제14조 ,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, 대학 방침 등에 의거하여 대상교원의 정년보장 적합여부를 심사한다.

② 정년보장을 통과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11.4.20., 2012.7.22.)

**제4조 (정년보장교원의 정수)**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는 현재 전임교원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.(개정 2015.6.15.)

**제5조 (위원회의 구성)** ①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3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)

②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 (위원회의 운영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은 자신에 관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④제3항에 의한 재적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정수는 그 재적위원 수를 감한 수로 한다.

**제 7 조 (정년보장임용 제외자)**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임용에서 제하여야 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2.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당연 면직 해당자
3. 심사평정 결과 합계가 85점 미만인 자

제 8 조 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0년 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, 2010년 4월 1일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2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는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본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11년 10월 1자 교수승진임용 신청자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정년보장임용 심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제2항은 정관 제37조 제2항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